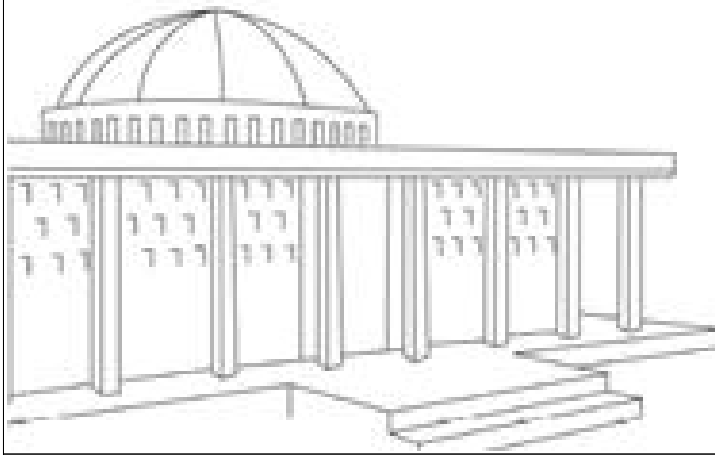


범죄예방 환경개선 (CPTED)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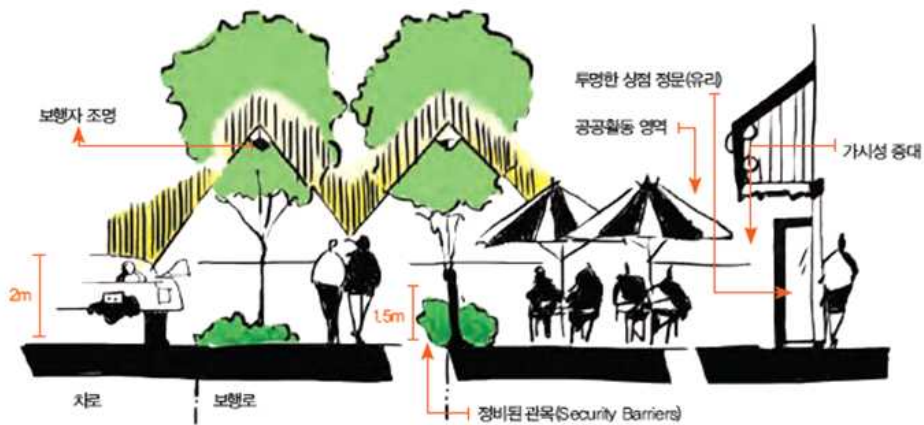
경찰청 생활안전국

|| 목 차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 rime P revention T hrough E nvironmental D 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I. CPTED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1. CPTED 도입배경	2
2. CPTED의 중요성과 필요성	4
3. CPTED 적용효과	6
II. CPTED의 개념과 이해	7
1. CPTED의 개념과 기본원리	8
2. CPTED의 이론적 배경	12
3. CPTED 적용과정	14
III. 국내외 CPTED 적용 현황	15
1. 국내 CPTED 제도와 사례	16
2. 국제 CPTED 제도와 사례	23
IV. CPTED 정책의 발전방향	29
1. 우리나라 CPTED 정책의 문제점	30
2. CPTED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31
V. 부록	33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34
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44
국토부,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53

I. CPTED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CPTED 도입배경
2. CPTED의 중요성과 필요성
3. CPTED 적용의 효과



I. CPTED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CPTED 도입배경



□ 경찰·관계기관의 지속적 노력으로 총 범죄는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의 체감안전과 밀접한 강력범죄, 성범죄, 절도범은 지속 증가 추세

- 총 범죄의 발생건수는 '04년(1,968,183건) 이후 10년 동안 9.7% 감소('14년 1,778,966건)하는 전체적인 치안지표는 향상되고 있으나,
- 국민의 생활안전과 체감안전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절도범죄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강력·성폭력·절도범죄 발생 추이 >

구분	2004년	2009년	2014년	10년간 증가율
강력범죄	15,496건	25,322건	25,277건	63.1% ↑
성폭력범죄	11,012건	17,242건	29,517건	168.0% ↑
절도범죄	155,311건	256,419건	266,222건	71.4% ↑

(2014 경찰통계연보 자료 참고)

□ 국민들은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

- 통계청의 사회조사(2014)에 따르면 국민들은 사회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인 중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²⁾(복수응답) >

구분	국가안보	자연재해	환경오염	인재	경제적위험	자원고갈	도덕성부족	신종질병	범죄발생	계층갈등	기타
2012	32.3	14.6	17.7	20.5	34.8	5.0	30.9	15.2	57.4	20.8	0.2
2014	35.9	16.6	17.6	46.1	25.4	2.7	34.9	13.2	49.1	18.9	0.3

1)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의 10년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3,767건으로 지난 10년 동안(2005년 3,813건 대비) 1.2% 감소하였으나, 강력범죄(흉악)은 66.2% 증가(2014년 인구 10만명당 66.5건 vs 2005년 40건) 했다고 분석

2) 통계청, 2014년 사회조사 보고서, pp. 214

- 범죄로 인해 매년 1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손실 되는 것으로 추정³⁾되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지대한 수준
- 이와 같이 범죄문제는 개인의 재산·신체상의 피해 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유도하여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 2016년 OECD 회원국 등 38개국 대상 삶의 질(Better Life Index)⁴⁾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하위권인 28위 수준이었으며, 특히 공동체 지표는 37위로 최하위에 해당
- △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대국민 공동체의식 설문조사 결과 70%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며, 공동체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

- 최근 들어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 수락산 살인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부각
 -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을 사후 검거에서 사전 예방활동 위주로 변화시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 증가

□ 주요 외국에서는 이미 범죄 대응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CPTED가 범죄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 이미 학계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효과를 증명하는 많은 연구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CPTED는 범죄예방의 새로운 분야로 발전
 - ※ 영국의 환경심리학자 라포포트는 ‘인간과 환경의 사회·문화적 관계’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범죄나 무질서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환경에 달려있다고 강조
-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 외국에서는 CPTED를 범죄예방을 위한 보편적 기법으로 활용, 범죄발생률 및 범죄두려움 감소 효과 검증
 - ※ 영국은 1998년 ‘범죄와 무질서 법’을 제정,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와 CPTED를 법제화(정착)함으로써 '95년부터 10년간 총범죄가 47% 감소하는 성과 달성

3) 형사정책연구원(2010), 2008년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 참조

2008년 기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 등 10대 범죄)와 재산범죄(절도·사기 등 7개 범죄)의 발생건수는 817,323건,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7천293억원으로 추산

4) ‘치안’은 삶의 질(BLI)을 측정하는 11개 범주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할 만큼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삶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

I. CPTED 도입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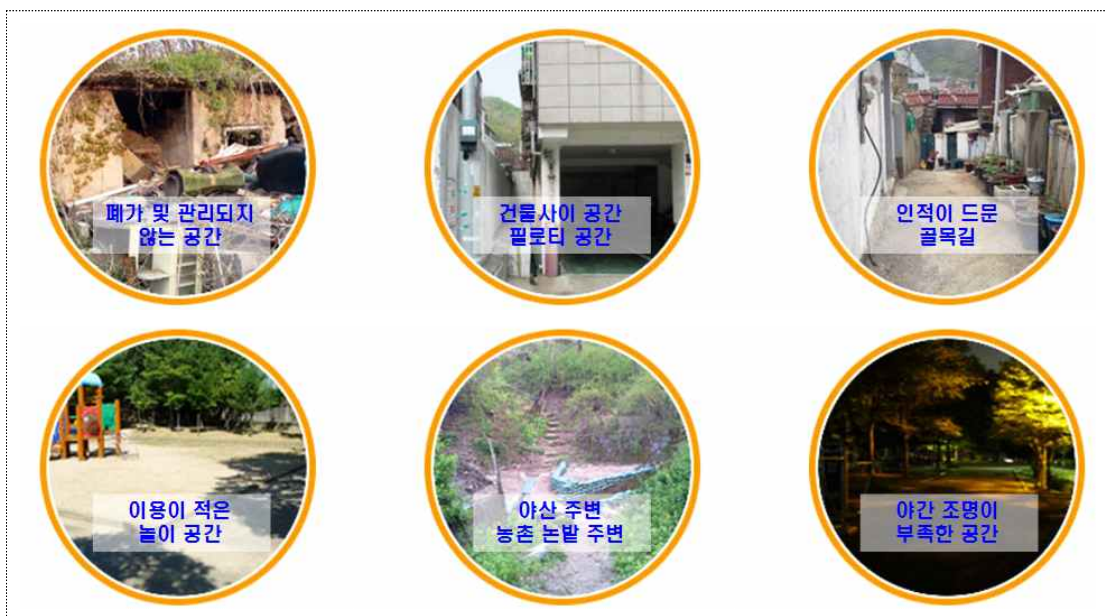
2. CPTED의 중요성과 필요성



□ 범죄 발생의 주요한 특징 中 하나로 범죄에 취약한 물리적 환경에서 범죄가 빈발하거나 집중되고 있음이 지적

-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를 분석해 보면 물리적으로 취약한 환경적 특징이 주요한 요인 中 하나로 분석되고 있으며,
- 특히 낡은 건물과 방치된 공·폐가, 복잡하고 좁은 골목길, 개별 건물의 부실한 보안설비, 가로등과 CCTV·비상벨 등 부족한 방범 시설(부적절한 위치선정), 안전시설에 대한 미흡한 유지관리 등은 범죄가 심각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요약

< 범죄에 취약한 환경 예시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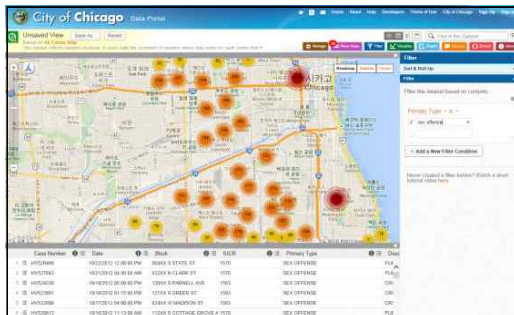
- 이와 같이 범죄에 취약한 환경은 주로 저소득층·서민주거지역에 더욱 집중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경제정책의 추진이 필요 하듯이 범죄예방환경에 있어서도 안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5)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 자료 : <http://www.cpted.kr/?r+home&c=02/0201/020102>

□ 사후대응 중심에서 범죄예방 중심으로 경찰활동의 패러다임 대전환

- 그간 경찰의 치안정책은 사후에 범죄를 진압하여 통제하려는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을 바탕으로 한 사후 대응(Reactive) 정책 위주
 - 범죄예방에 대한 기존 정책은 방범용 CCTV 증설, 치안인력의 충원 및 순찰강화, 범죄수사 및 처벌강화 등의 대응에 그쳤으나, 근본적인 범죄예방대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한계⁶⁾
- CPTED는 범죄문제에 대한 경찰의 전통적 접근을 탈피하여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범죄 발생은 물론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경찰활동의 전략으로 활용 기대
-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범죄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CPTED 활동과 연계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가능

< 범죄위험지역 Hot Spot(좌, 시카고 범죄유형별지도 / 우, 경찰청 GeoPros >



□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체치안의 일환으로 CPTED 활성화 필요

- 더 이상 범죄문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효과적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공동체치안)가 절실
 - CPTED는 범죄문제를 거버먼트(Government)라는 틀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새로운 틀로 바꾸는 개념으로 공동체치안의 핵심

전통적 접근 : Government(통치)

- △ 발생한 범죄에 대한 사후 대응
- △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중심
- △ 범죄자 중심



선택적 접근 : Governance(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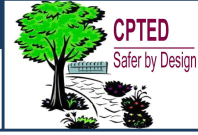
- △ 범죄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적 대응
- △ 경찰·지자체·주민 등 네트워크 중심
- △ 환경 중심

6) “깨진 유리창 이론”을 공동저술한 학자인 George Kelling은 “예방적 순찰, 서비스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범죄수사라는 경찰 전술의 세가지 핵심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범죄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사후대응 위주와 전통적 경찰활동의 한계 지적



I. CPTED 도입배경 및 필요성

3. CPTED 적용의 효과



영국 London⁷⁾

1980년대 후반 런던의 에드먼턴, 햄리츠 타워, 해머스미스 등 세 지역에서 가로 조명을 평균 5럭스(lux) 이하에서 10럭스(lux)로 높이자 세 곳 모두에서 무질서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보행자의 도로 사용률도 50%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효과 발생

미국 Hartford⁸⁾

1970년대 초반 미국 Connecticut주 hartfort시에 위치한 Asylum Hill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자 이 지역의 주거시설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컬데식 구조로 도로를 개선하고, 전반적 가로정비를 실시한 결과 강도 범죄가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

일본 도쿄⁹⁾

일본 도쿄의 미드타운과 롯폰기힐스 등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셉테드가 도입, 모든 주차장에는 비상벨이, 보행자 통로에는 5m 간격으로 조명 설치 / 여타 지역에서는 기존 가로등 불빛을 주황색에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푸른색으로 바꾼 결과 범죄율이 20% 감소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¹⁰⁾

2014년 부산 금정구 가마실 행복마을 등에 암심지도, 비상벨, 아동안전 지킴이집, 치안올레길 등 셉테드 기법을 적극 적용한 결과 5대 범죄가 65.9% 감소한 것으로 분석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¹¹⁾

2012년 서울시에서 추진된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포구 염리동에 운동공간, 지킴이집, 사랑방, 초소, 담벼락 보수 등 CPTED를 적용한 1.7km의 소금길을 조성한 결과 78.6%의 범죄예방 효과와 83.3%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지구대 신고전화 30% 급감)



7) 출처 : 셉테드 도입 9년 만에 범죄율 39% '뚝' <2006.08.15.자 주간동아 기사>

8) 출처 :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 인터넷 웹 사이트 (<http://www.cpted.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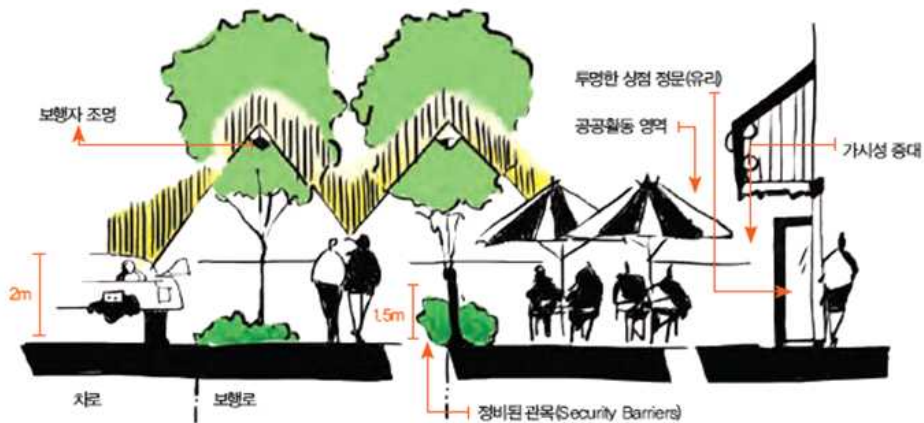
9) 출처 : 우리가 지켜보는 우리 동네, 범죄 꿈쩍 마! <2009.03.10.자 주간동아 기사>

10) 출처 : 부산 셉테드 마을 범죄예방 '효과' <2015.03.04.자 한국일보 기사>

11) 출처 : 범죄 막는 디자인 CPTED ③ <2013.12.30.wk 도시미래신문 기사>

II. CPTED의 개념과 이해

1. CPTED의 개념과 기본원리
2. CPTED의 이론적 배경
3. CPTED 기본 설계와 관리전략



II. CPTED의 개념과 이해

1. CPTED의 개념과 기본원리



□ CPTED의 개념 : 범죄예방 환경설계, 범죄예방디자인

- CPTED¹²⁾란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수준 및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기법

※ 범죄학은 물론 건축학, 환경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다학제적 접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는 분야

- △ 미국 범죄예방연구소(NCPI), The proper design and effective use of the built environment can lead to a reduction in the fear and incidence of crime, and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 △ Timothy D. Crowe(2000),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범죄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으로 정의

- 구체적으로는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 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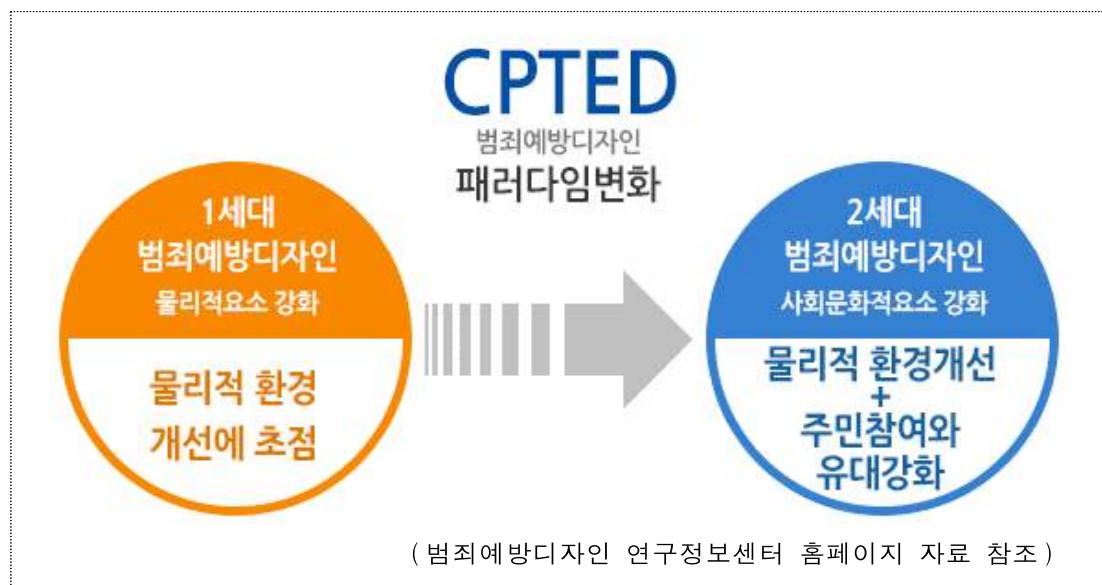
(2013 경기도,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참고)

12) 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영어 두문자어로 우리말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또는 '범죄예방디자인'으로 표현

- 초기의 CPTED는 행정기관 및 전문가의 주도로 범죄취약요소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건축기법으로 이해하는 경향<1세대>이 강했으나,
 - 지역사회의 인구사회학적 측면을 간과, 환경개선의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경찰 등의 참여를 간과했다는 비판 제기

※ 1세대 CPTED만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¹³⁾

- 이웃과의 교류 증진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커뮤니티 활동, 범죄예방 주무기관인 경찰과의 연계, 경찰·지자체·지역사회의 문제해결식 네트워크 등 사회·문화적 노력과 함께 지역의 범죄위험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체계적 전략으로서의 <2세대 CPTED> 개념이 부각되는 상황



□ CPTED의 기본원리 : Surveillance, Access Control, Territoriality

- CPTED는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접근통제(Access Control), 영역성(Territoriality) 강화라는 3가지의 기본 전략과 활용성 증대(Activity Support),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라는 2가지 부가전략으로 구성

※ 각 기본원리는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중첩적이며, 상호 영향 관계 하에 있으며,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이해 필요

13) 김연수·김종길(2015), CPTED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7권 1호, pp. 3-27

< CPTED의 기본원리 >

CPTED의 원리		내 용
기본원리	1.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자인, 장소(환경을 구성하는 요건)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일반인들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을 배치함
	2. 접근통제 (Access Control)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행위의 노출을 증대시킴
	3. 영역성 강화 (Territoriality)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함
부가원리	4. 활용성의 증대 (Activity Support)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 및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눈에 의한 자연스런 감시를 강화하여 인근 지역의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느끼도록 함
	5. 유지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



- 2세대 CPTED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공동체 강화를 포함시켜 CPTED 기본원리를 재구성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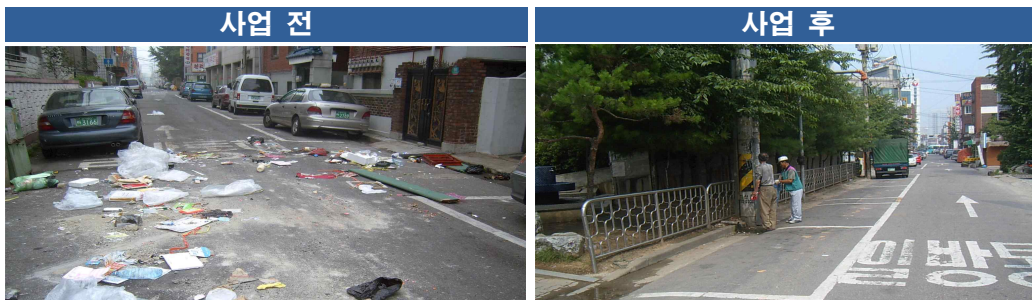
- △ 2세대 CPTED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강화의 3요소를 기본 원리로 제시하고, 이의 실천(적용)원리로서 ①자연감시, ②접근통제, ③영역성 강화, ④활용성 증대, ⑤유지관리를 제시하기도 함

감 시 (Surveillance)	접근통제 (Access Control)	공동체 강화 (Community Building)
◦ 기계적 감시 : 조명, CCTV ◦ 조직적 감시 : 경찰, 경비원 ◦ 자연적 감시 : 창문, 문디자인	◦ 기계적 통제 : 보안설비, 잠금장치 ◦ 조직적 통제 : 경찰, 경비원 ◦ 자연적 통제 : 출입구, 대지 경계부	◦ 근린교류 및 비공식적 사회통제 ◦ 주민자치활동 ◦ 자발적인 환경관리

CPTED 개념의 진화 : 3세대 CPTED

△ **1세대 셉테드** :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의 강화 등 셉테드의 기본 원칙에 입각,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물리 환경을 설계·개선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 방법**

⇒ 2005년 경찰청에서 셉테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부천시 고강동 등 3개 지역에서 쓰레기 치우기, CCTV 설치 등을 실시하여 절도는 38.3% 줄고 강도는 60.8% 감소



△ **2세대 셉테드** : 범죄의 원인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 **주민이 환경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물리적 개선과 함께 유대감을 재생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 방법**

⇒ △ 주민 쉼터 조성 △ 우리동네 안전지도 제작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범죄 발생 자체의 감소뿐만 아니라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에 초점



△ **3세대 셉테드** : 2세대 셉테드에 대한 접근을 확장, 지역 구성원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적 추진 절차 구축, 셉테드의 지속가능성 확보**

⇒ 관(官) 주도 정책에 주민·외부의 협조방식을 탈피 → 관공·주민·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공동체가 문제인식 ~ 정책 수립·시행까지의 절차를 함께 결정하고 추진





II. CPTED의 개념과 이해

2. CPTED의 이론적 배경



□ CPTED의 근거이론

- 전통 범죄학에서는 범죄원인을 개인의 성향과 심리, 사회경제적 요인의 결과로 해석하였으나, 1900년대 범죄의 상황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환경과 공간, 공동체 등의 종합적 원인을 분석하는 이론 발달
- 주요 이론으로 환경범죄학 이론, 일상활동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범죄 패턴이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방어공간이론 등을 들 수 있음

Theory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 자료 참조)

- △ **환경범죄학이론** : 범죄란 '법, 대상물, 범죄자, 장소'의 4가지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장소'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 환경범죄학이론을 통해 공간 범죄학과 도시건축학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범죄연구가 통합될 수 있었음
- △ **일상활동이론** : 기존 범죄이론들이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것과 달리 '장소'를 중심으로 한 '기회적 요인'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 범죄는 범죄자, 목표물, 범죄유발 환경과 방어기재의 부재라는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
- △ **합리적 선택이론** : 범죄는 범죄자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발생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범죄자는 개인과 주변 상황을 모두 종합해 범죄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범죄로 인한 이익과 범죄의 실패 위험을 비교형량하여 범행을 실행에 옮긴다고 보고 있으며, 범죄가 발각될 환경적 요건이 강화될 경우 범죄를 포기한다고 설명
- △ **범죄패턴이론** : 범죄발생장소를 '적합한 범죄장소' 특성에 대해 학습된 범죄자의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적 단서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의하며, 지역유형·건물위치·경제수준·감시가능성에 따른 범죄유발 및 억제요인과 범죄대상물 선택요인 등을 구분한 범죄발생 패턴을 규명하는 이론
- △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 범죄행위에 유구되는 노력이나 비용의 증가, 범죄행위의 위험성 증가, 범죄행위를 통한 이익의 감소,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 또는 수치심의 증가 등 4가지 기본원칙을 설정, 이에 대한 16가지의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세부전략을 제안
- △ **방어공간이론** :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강화시키면 지역주민과 잠재적인 범죄자 모두에게 그 지역은 소유자가 있으며, 소유자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다는 영역 의식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이론

□ CPTED 연구의 발전과정

- CPTED는 1960년대부터 학자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CPTED라는 용어는 Jeffery의 저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1971)」에서 최초 사용

- △ Jane Jacobs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1961)'이란 저서에서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강조한 영역성(territoriality)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거리의 눈'이라는 개념을 통해 감시성(surveillance)의 개념을 정리
- △ Angel(1968)은 Jacobs의 연구를 보완, 토지이용강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거리의 눈'의 증가에 따라 충분한 감시자가 공간 내에 존재함으로써 범죄율을 감소시킨다는 논리를 전개

- Oscar Newman(1973)은 영역성, 자연적 감시, 안전한 이미지, 입지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의 개념을 제시, 현재의 CPTED 기념의 기초를 다짐
- 1980년대에는 CPTED의 학술적 접근을 넘어 정책적으로 발전된 시기
 - 영국의 내무부는 Ronald Clarke의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을 활용한 「Designing out Crime(범죄퇴치디자인)」 프로그램을 최초로 실시
 - Wilson & Kelling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통해 물리적 쇠퇴가 지역사회의 응집력 해체로 연결되어 범죄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
- 1990년대에서는 CPTED 개념을 범죄예방정책에 실용화시킨 방안 등장
 - Poyner & Webb는 「Crime Free Housing(1991)」이라는 저서를 통해 주거공간의 범죄감소에 유용한 12가지 응용전략을 제안
 - Timothy Crowe는 경찰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도구를 제공하는 다양한 CPTED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2000년대 이후에는 기존 물리적 환경설계를 강조하는 1세대 CPTED를 넘어 사회·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2세대 CPTED로 발전

II. CPTED의 개념과 이해

3. CPTED 적용 과정¹⁴⁾



□ CPTED 적용개요

- 범죄와 관계있는 요인은 사람, 시간, 환경적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각 차원의 영향요인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총체적 노력 필요
- CPTED 적용은 기본적으로 ①현황파악, ②계획수립, ③전략실행, ④유지관리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단계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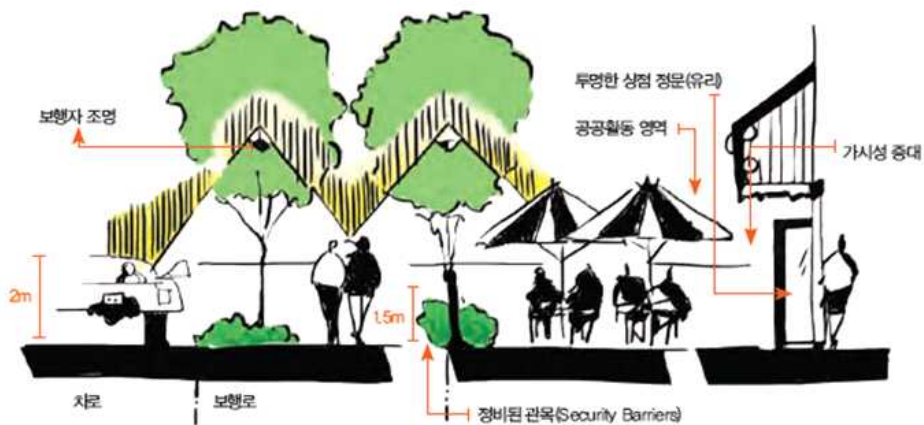
1단계 현황파악	◦ 지역의 중요한 범죄문제 규명을 위해 경찰의 범죄자료 분석과 함께 지역 주민 조사, 경찰·주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조사를 실시 ◦ 취약환경 분석과 함께 개발할 경우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자원에 대한 분석도 동시 실시
2단계 계획수립	◦ CPTED 개념과 원리가 반영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계획 수립 ◦ 계획은 지자체나 경찰이 수립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 방안 강구 필요
3단계 전략실행	◦ 물리적 환경개선은 공사업체에서 대부분 담당하나 이 부분에서도 지역주민의 참여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사회적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이 필요하며, 범죄예방 주무기관인 경찰활동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4단계 유지관리	◦ 기본계획 실행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사업실행 전·후 범죄현황 분석과 함께 주민만족도 분석 실시, 도출된 문제점은 향후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는 Feed-Back 전략 필요

14)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 자료 참조 : <http://www.cpted.kr/?r=home&c=02/0205/02002>

윤재옥 의원실 정책보고서

Ⅲ. 국내외 CPTED 적용 현황

1. 국내 CPTED 제도와 사례
2. 국제 CPTED 제도와 사례





Ⅲ. 국내외 CPTED 적용 현황

1. 국내 CPTED 제도와 사례



□ 주요 CPTED 지침(Guide Line)

- 국내 CPTED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환경·건축공학적 측면에서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05년 경찰청에서 최초로 CPTED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환경범죄학과 공공정책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진행¹⁵⁾
- 국내 CPTED 지침은 '05년 전후로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재개발 지역, 범죄취약지, 학교 등을 중심으로 CPTED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 국내 주요 CPTED 지침(가이드라인) 내용¹⁶⁾ >

구분	지침(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경찰청 (2005년)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 셉테드의 개념 및 원리소개 ▶ 미국, 영국, 호주 등 제도 및 적용사례 소개 ▶ 건물용도별 적용방안 및 일반적인 지침 정리
판교신도시 (2005년)	판교신도시 범죄예방 설계지침	▶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을 기초로 작성
행정중심 복합도시 (2007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	▶ 환경부문 시행지침 중 '안전도시' 조성계획에 반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지, 공업용지에 대한 개략적인 지침 제시 (감시 및 접근통제 중심 전략)
부천시 (2009년)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 아파트, 기타시설(상업, 업무시설) 지침 분류 ▶ CPTED 기본원리를 근거로 일반적 내용으로 구성
교육부 (2013년)	학교 셉테드 가이드라인	▶ 사각지대에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개방형 공간으로 설계 ▶ 학생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지관리 프로그램 ▶ 외벽 도색 및 인공감벽, 이벤트 무대 등 학교분위기 개선
서울시 (2013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셉테드 가이드라인	▶ 도시안전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 주민참여형 재생 사업에도 CPTED 적용 ▶ 주민 참여를 통한 범죄발생공간과 범죄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공간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지역안전지도 작성
국토 교통부 (2013년)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 사전검토, 영역성 확보, 접근통제, 활동성 확보, 조경, 조명 가이드라인 제시 ▶ 공동주택의 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주차장, 조경, 승강기, 계단, 문, 창호, 배관 설비 등 세부기준 제시
(2015년)	범죄예방 건축기준	▶ 건축법령에 따른 법적 기준(고시) 마련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의무기준 제시 ▶ 단독주택 등 권장기준 제시

15) 박현호(2007), 도시범죄대책으로서의 CPTED, 도시정보(정보지), 30(3)

16)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4),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내용 일부 수정

□ CPTED 관련 법령

- 건축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부장관의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2014년 개정)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 행정규칙에서 구체적 설계기준 제시

△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기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범죄예방’을 고려하도록 명시

※ 대부분 ‘범죄예방 대책 혹은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이는 CPTED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 △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예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2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시장·군수는 제28조 20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 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4의2.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정비계획의 내용)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8의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처리장,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 CPTED 관련 지방자치단체 규정

- 최근 들어 지자체에서 CPTED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개념을 정책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지속 증가하는 경향

- △ 부천시는 CPTED 시범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이후 2009년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공시
- △ 서울시는 2008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CPTED 관련 항목(야간조명시설, 담장 높이규제, CCTV 설치 등)을 반영하였으며, 2009년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수립하고,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조례(제4조)'에 CPTED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
- △ 경기도는 2013년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디자인 매뉴얼'을 제정하고, 안전마을 인증제도 도입 검토
- △ 부산시는 2013년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

- 2016년 4월 기준 전국에 10개 광역자치단체와 5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CPTED 관련 조례를 제정 (*2015년 이후 크게 증가)

- 해당 조례의 내용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주로 ①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②도시디자인 기준, ③추진사업, ④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CPTED 관련 조례 제정 자치단체 현황¹⁷⁾ >

구분	'13년	'14년	'15년	'16.4월
광역	경기, 부산, 울산	광주, 대전, 경북	대구, 충남, 강원	서울
기초		서울 동작, 부산 북구, 영도, 사하, 동래, 수영, 사상, 해운대, 울산 북구 등 9개	서울 성북, 송파, 부산 강서, 기장, 대구 북구, 인천 남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 경기 과천, 강원 영월, 충북 충주, 충남 천안, 전북 무주, 경북 경산, 경남 거제 등 33개	서울 강북, 부산 남구, 강원 삼척, 정선, 경북 칠곡, 충남 아산, 전남 광양, 충남 서산 등 10개
계	3개	12개	36개	11개

17) 국회입법조사처('16.5월), 이슈와 논점(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만들기 현황과 과제) 보고서 참조

□ 주요 CPTED 적용 사례

○ 부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2013~2014)

사업 개요	△ 2012년 도시안전 디자인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CPTED 도입 추진, 2013~2014 부산 서구 남부민동, 북구 구포동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 기본적으로 안전한 마을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지역별 ‘안심길’과 강조색상 선정, 각 사업지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 도출, 환경개선 추진 ※ 구포동 : 노상범죄 예방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 남부민동 : 침입절도 예방을 위한 주변 시야확보와 골목길 밝히기 / 모라동 : 시장 야간조명 설치로 야간 보행공간의 안정성 확보 등
주요 성과	△ 시범사업 후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 88.2%가 환경개선에 만족 △ 2014년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 대전’에서 국토부 장관상 수상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조성 사업」 (2013)

사업 개요	△ 2013년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 사업 이전에 ‘범죄예방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과 민간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 ※ 사업 전반에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산책로인 ‘소금길(1.7km)’을 지정하고, 곳곳에 운동시설과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지도 제작, 방범용 LED 번호 표시등(69개) 설치, 안심주택(6개소) 지정 등 환경개선
주요 성과	△ 사업 완료 후 실시한 주민 의식조사에서 범죄불안감은 9.1% 감소, 마을에 대한 애착심 13.8% 증가, 범죄예방 효과 78.6% 긍정 응답

○ 부천시 「CPTED 시범도시 사업」 (2004~)

사업 개요	△ 2004년 경찰청에서 CPTED를 본격 도입하면서 전국 최초로 부천시(고강동, 심곡동, 소사본동 등)를 CPTED 시범사업도시로 선정 △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사전 연구용역 수행, CCTV 설치(30대) 및 가로등 개선 등 CPTED 전략 마련, 환경개선 추진 △ 부천시에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실시
주요 성과	△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산 등의 이유로 계획했던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국 최소 CPTED 사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 마련 (CPTED 기본 모델로서 의미)

○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 (2013~)

사업 개요	△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초중고등학교 50여 곳을 대상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적용 학교 컨설팅 사업 진행 △ 이 사업은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설치 및 변경시 CPTED 전문가들이 현장방문과 수시자문을 지원하고, 학교별 맞춤형 전략을 도출,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체계로 운영 ※ 학교당 약 2,000만 원 정도의 환경개선 예산 지원 △ 구체적으로 야간조명 추가, 체육관이나 화장실 출입문을 투시형으로 개선, 외부인 출입통제, 감시 사각지대 출입방지 시설 설치, 유희 공간을 학생 편의시설로 활용, 방치된 벽면 도색 등 CPTED 적용
주요 성과	△ 각 학교별 지원예산 규모가 작아 큰 성과를 나타내기는 한계이나, △ 사전에 선생님들에게 CPTED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스스로 학교의 문제점을 찾아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대책을 고민하는 맞춤형 CPTED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음

- 경찰청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를 예방하는 ‘공동체 치안’의 일환으로 CPTED 사업을 적극 지원, '15년부터 우수사례 장려(전파18)에 노력

< '16년 상반기 CPTED 관련 경찰청 우수사례 >

연번	경찰서	주요 내용
1	서울청 도봉서	< 민간기업 협업, 여성이 안전한 행복마을 만들기 > ▶ ADT캡스 출동차량(6대), 마을버스 3개 업체(9개노선, 72대)와 협업하여 여성·노약자 등 사회 약자가 원하는 지점까지 차량으로 안내하는 귀가서비스 시행
2	서울청 동작서	<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 활동 > ▶ 한국 야쿠르트, 한국전력공사, 한국외식업중앙회, 동작우체국 등 4개 기관과 협업하여 소속 외근요원·배달원 등을 범죄감시 및 신고요원으로 활용
3	서울청 성동서	< (주)이마트 대형주차장 범죄예방활동 > ▶ 퇴직경찰관을 마트 주차장 보안관으로 채용하는 한편, 각종 방법시설 확충 및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실종아동 대응 합동훈련 실시 ⇨ 전국 확대 예정
4	대구청 동부서	< 민간기관 협업, '어두운 동구 밝히기 프로젝트' > ▶ 한국 감정원(1억), 신용보증기금(1천만)이 예산을 후원하고 봉사협회와 함께 범죄 취약구역 내 여성·노인 등 사회 약자 주 보행로 내 LED 보안등 설치
5	인천청 남부서	<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안전한 마을 그리기 사업 > ▶ 범죄취약환경에 대한 지자체의 개선 의지 미약으로 경찰-지역주민이 협업, 행자부 클라우드 펀딩* 사업 공모 예산(500만원) 확보, 환경개선사업 추진 中 * 인터넷으로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방식
6	광주청	< 광주청-시청 협업, '스마트 가로등 구축' > ▶ 시청 공무원이 영상녹화·자동 신고·위치전송기능을 갖춘 스마트 가로등 개발(특허출원), 광주청 협업하여 올해 150개소 설치 예정(예산 3억원) ※ 2018년까지 설치예산 20억 확보, 1,500개소 설치 추진
7	충남청 공주서	< 대학가 여학생 보호를 위한 '학생안심원룸 인증제' > ▶ 경찰-시청-소방-공주교대가 함께 대학 주변 여학생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원룸·다세대주택 대상으로 방범인프라 구축 정도에 대한 인증사업 실시 ※ 원룸단지 내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 비상경보기 등 설치사업 병행
8	전북청 고창서	< 매일유업 상하공장 협업, 안전한 고창만들기 프로젝트 > ▶ 매일유업 통근버스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를 회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범죄예방 힐링캠프 운영
9	경북청 구미서	< 구미시청 협업, '안전하고 행복한 구미 만들기' > ▶ 여성·아동·외국인의 안전을 타겟팅하여 방법시설 설치사업과 함께 건축법 고시 범죄예방건축기준에 따른 심의를 경찰서가 수행(기초지자체 중 유일)

18) 경찰청에서는 CPTED 사업 등 공동체치안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15.9월 '범죄예방 우수 지자체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16년에는 중앙일보와 함께 (가칭)대한민국 범죄예방시상식 개최(12월) 추진 중



Ⅲ. 국내외 CPTED 적용 현황

2. 국제 CPTED 제도와 사례



□ 영 국

- 영국은 범죄예방 디자인(Design Out Crime) 적용이 가장 활성화 된 국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CPTED 제도 정착¹⁹⁾
 - 1988년 「범죄와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 제정을 통해 도시 계획 및 설계에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의무화²⁰⁾ 하면서 CPTED가 활성화되는 계기 제공
 - 법 제5조에서는 경찰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안전협의체 구성 책임을 부여하고, 범죄와 무질서 감축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전문가와 단체를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인 CPTED 적용 도모
- △ **범죄와 무질서 법 제5조 (Authorities responsible for strategies)** 경찰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안전협력체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고 범죄와 무질서 감축 관련 활동에 협력해야하는 전문가, 단체를 명시
 - △ **제6조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es)** 지역책임기관은 3년마다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현황조사, 조사결과분석 및 발표, 관련 기관·조직의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 목적 및 목표 등이 포함된 보고서 발표
 - △ **제17조 (Duty to consider crime and disorder implications)** 범죄와 무질서 감축을 위하여 지방정부, 경찰, 국립공원 등 관련 기관의 의무를 명시
- 한편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의 지역개발 전략 규정을 통해 도시계획정책안 수립시 CPTED 개념을 포함시킬 것을 명시
 - 세부시행규칙으로 ‘안전한 장소 만들기 : 도시계획과 범죄예방’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및 건축설계에 섭테드를 적극 반영할 것을 권장²¹⁾

19) 해외의 여타 국가들에서 CPTED 적용 방식이 다소 산발적이고, 지역적인 반면 영국에서는 근거 법령의 제정을 통해서 CPTED 국가 주도로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음

20) 만약 지방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근거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1) 이형복(2010), CPTED를 통한 대전의 범죄예방 정책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범죄예방환경 설계제도인 SBD(Secured By Design) 인증제²²⁾ 운영, 범죄예방 우수건축물 확산을 통해 주거침입범죄 예방의 성과 거양
 - 경찰과 관계 전문가가 환경설계와 범죄예방 구조를 심사해 통과한 건축물에 SBD 인증 실시, 범죄예방 우수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
 - SBD 건축물이 침입범죄 예방에 효과를 나타내자 네덜란드, 호주, 일본 등에도 유사한 인증제도가 확산



○ 주요 우수사례

리버풀 엘도니안	△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의 범죄 예방 문제점을 파악하고, CCTV·옹벽 등 물리적 차폐시설을 활용하여 자연감시와 영역성 강화 △ 영국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마을 중 하나로 선정, 2004년 UN 세계주거상 수상	
버밍엄 캐슬베일	△ '90년대 까지 높은 실업률과 범죄율로 슬럼화 진행 △ 범죄 취약공간 및 건물 제거, 감시가능성을 높이는 시설계획 및 배치, 지역방범제 운영 등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시 △ 범죄율 뿐 아니라 실업률까지 감소하는 등 효과	
런던 크로머 거리	△ SBD 원칙을 적용해 조명환경 개선과 CCTV를 설치하고, 주거단지 중앙에 근린공원을 배치하여 감시가능성을 높이고, 주민간 교류 활성화, 투시형 담장 장려 등 CPTED 도입 △ 침입범죄 40% 감소, 기타 범죄 20% 감소 효과	

22) SBD 제도는 내무부(Home Office) 산하 범죄예방국(Crime Reduction Unit)과 교통지자치부의 협의 및 후원을 바탕으로 전국경찰지휘관협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PO)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공식적인 CPTED 제도

□ 미 국

- 미국은 CPTED 이론이 시작된 나라인 만큼 연구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 실행 및 평가를 통해 CPTED 발전
 - Nation Institute of Justice 중심으로 건축환경과 범죄예방 연구 주도
- 미국의 CPTED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확산되었는데, 아리조나 템페시의 ‘설계평가 조례(1997)’, 워싱턴 주의 ‘CPTED 관련 조례(2002)’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²³⁾

- △ 아리조나 주 템페시의 설계평가 조례 중 환경설계규정(Environmental Design Articles)에서는 범죄예방계획 평가와 승인의 권한을 관할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신축이나 증개축, 건물의 등기 시에 셉테드 규정을 적용
 - 범죄에 취약한 숙박시설, 유흥시설, 야간업무시설, 편의점 등에 대해서는 방범설계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 실시
- △ 워싱턴 주에서는 조례를 통해 주거, 상업, 업무시설에 외부조명, 조경설계, 건물 보안 대책 등 셉테드 기준 제시

○ 주요 우수사례²⁴⁾

캘리포니아 락우드가든	△ 락우드가든 지역은 저층 소규모의 저밀도 연립주택단지가 밀집, 범죄 피해 및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CPTED를 적용한 환경개선 실시 △ 영역적 위계 정리를 위한 반사적영역 활용 강화, 바닥포장 변화, 보행로 교차점 정비, 공적 정원의 클러스트화, 단지중앙광장 개조 등 기법 적용 △ 사업 이후 거주자들의 지역시설에 대한 자부심 고취, 범죄율 감소(강력범죄 61.5% 감소), 낮선이에 대한 관심이 27% → 50%로 증가하였으며, CPTED 적용으로 인해 범죄두려움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	---

23)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4),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참조

24)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 CPTED 적용 해외사례 참조



□ 호 주

- 호주에서는 1980년대부터 호주범죄과학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를 중심으로 CPTED 연구를 진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지자체에서 CPTED 조례 제정 및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시행²⁵⁾
- 호주의 대표적인 법제도는 New South Wales 주정부의 ‘환경계획 및 평가법’으로 모든 건축설계 허가 관청이 새로운 개발신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범죄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특히, NSW 주의 모든 지역에서는 행정당국과 경찰, 유관기관들이 ‘범죄예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건축설계나 개발 계획에 범죄예방대책 매뉴얼을 활용

< CPTED 관련 주요 법률²⁶⁾ >

NSW 주 Enviro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79C조에서 지역개발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회에서 모든 개발 사업에 범죄위험 감소 원리를 고려할 것을 제안
Proceeds of Crime Act 2002	범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범죄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The Building Code of Australia	안전, 건강, 편의시설의 지속가능하며, 일관적인 CPTED 기준 제시

○ 주요 우수사례

Fairfield 시²⁷⁾	△ 강력범죄가 사회문제화 되자 시정부 주도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건설’ 프로젝트 시행 △ 시장 직속으로 ‘범죄예방 자문회의’ 설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범죄예방전략을 도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강력범죄로 위험한 도시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	
--------------------------------------	--	--

25) 유광흠·조영진(2014),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 auri 연구보고서 참조

26) 조영진 외(2015),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참조

27)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 CPTED 적용 해외사례 참조

□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1996년부터 영국의 SBD를 벤치마킹한 경찰안전주택(Dutch Police Label Secured Housing) 인증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 인증제도가 정착된 지역의 경우 침입절도가 34% 감소하는 등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2005년 ‘Police Label’이라는 법인회사가 설립된 이후 PL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폭증하는 상황
- 주택 인증제도와 함께 문, 창호 등 범죄예방 제품에 대한 침입범죄 성능인증제도인 SKG/SKH KOMO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²⁸⁾
- 1999년 주택법 개정으로 모든 주택의 창, 도어는 3분 이상의 침입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제품 사용 의무 부과(SKG/SKH KOMO 인증 요구
 - 2004년 건축법 개정으로 모든 신규건물은 경찰안전주택 인증을 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건축할 것을 유도



□ 일 본

- 일본에서는 도시안전연구소(Japaness Urban Security Research Institute)와 경찰청, 법무부 등에서 오래전부터 CPTED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 경찰청에서는 1980년 16개 주요 도시에 대한 CPTED 대책을 강구한 바 있으며, 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도시방범기준’을 개발·적용²⁹⁾

28) 박현호(2013), 방범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 시험·인증 체계에 관한 모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6호, pp. 255-292

29) 김걸·김병선(2008), 일본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국토연구원

- 일본에서도 영국의 SBD, 네덜란드의 ‘경찰안전주택’과 유사한 제도로 ‘방범우량맨션(주차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제품에 대해 별도로 인증제도(Crime Prevention Mark)를 운영하고 있음
- ‘방범우량맨션’ 제도는 1990년 히로시마 지방에서 시작되었던 제도가 2008년 전국 확산된 것으로 동경·오사가를 중심으로 500세대 이하 소규모 타운하우스에 대한 인증이 확산되는 추세
 - ※ 일본에서 실시한 범죄안전감 조사결과, 방범우량맨션의 거주자는 74.5% 안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주택(26.3%)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남³⁰⁾
- CP마크 제도는 문, 유리창, 자물쇠 등 방범제품이 5분 이상의 파괴 침입 실험을 통과한 경우 인증 실시, 방범산업 발전에 기여³¹⁾

○ 주요 우수사례

아이치현	△ 일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조례는 아이치현의 ‘안전한 도시계획 조례’임 △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CPTED 기법을 적용한 주택 단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범모델단지 시범인증제도로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활성화 도모 △ 아이치현에서는 주민이 주축이되고 지역의 행정과 경찰이 연대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범대책을 수립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경찰순찰 강화 및 방범연락소 증설, 주민교육, 가로정비사업 등으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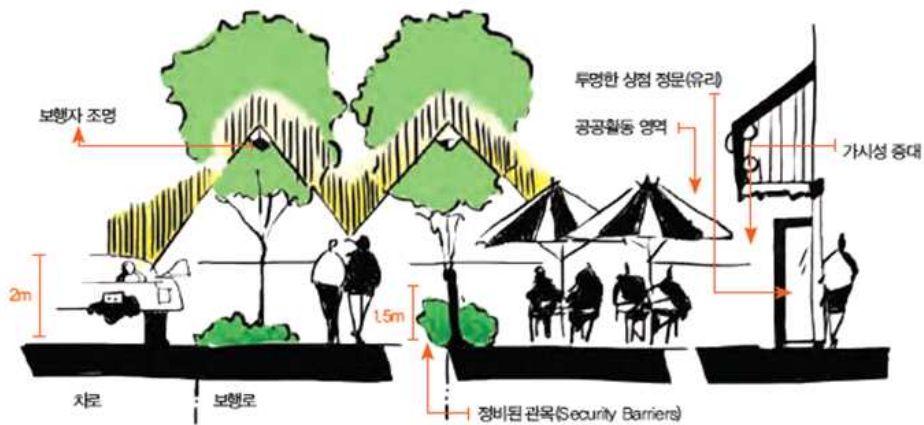
30) 주간동아 548호(2006) pp.26~27, 커버스토리 ‘환경 바꾸니 범죄가 뚝!’ 참조

31) 양진석(2010), 환경설계를 활용한 도시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윤재옥 의원실 정책보고서

IV. CPTED 정책의 발전방향

1. 우리나라 CPTED 정책의 문제점
2. CPTED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IV. CPTED 정책의 발전방향

1. 우리나라 CPTED 정책의 문제점



- 최근 ‘범죄로 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³²⁾가 높아지고, 범죄예방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CPTED가 부각되면서 각 부처·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CPTED 도입·추진 중에 있으나,

-
- ▶ 법무부 ‘법질서 실천운동사업’,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안전처 ‘안전도시사업’ 등 CPTED 추진
 - ▶ ‘15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250여개의 다양한 CPTED 사업 추진
 - ▶ 62개 지자체 CPTED 관련 조례 제정
-

- CPTED가 모든 지역과 공간, 범죄에 유효한 만병통치약으로 오해, 지역 특성과 체계적 전략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등 일부 문제점 야기

- 지역의 범죄환경, 시설·환경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지자체장의 관심에 따라 1회성, 인기성 위주의 사업으로만 진행

※ 지역 맞춤형 CPTED 도입이 아닌 벽화·CCTV 등 가시적·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

-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지역·규모 편중, 꼭 필요한 저소득층 거주지역이 소외되는 범죄예방환경의 ‘빈익빈 부익부’ 야기

- CPTED 사업 전반에 대한 선도기관(Control Tower)이 없어 체계적 사업 추진이 곤란하고, 사업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 책임성 부재

※ CPTED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지·건축물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도입 필요

- 범죄예방 주무기관인 경찰과의 협력을 위한 정교한 프로세스가 부재하여 CPTED 사업의 제대로 된 효과 달성에 한계

※ 사업지 선정, 환경개선 방법, 사후 관리 및 순찰활동과의 연계 등 총체적 협력 필요

32) 2010년 여중생 성폭행 살인(김길태 사건), 2015년 대형마트 주차장 부녀자 납치살인(김일곤 사건),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범죄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증가

IV. CPTED 정책의 발전방향

2. CPTED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 성공적 CPTED 도입 요건

CPTED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경찰,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범죄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함께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시행하는 문제해결식 범죄예방활동으로 체계화될 때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임

① 지역의 특성과 범죄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진단 (CPTED 전제조건)

- 범죄 취약지 및 취약요소 등 해당 지역의 범죄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된 후 이에 맞춤형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 ※ 경찰의 범죄발생통계 등 범죄정보자료에 기반한 지역별 범죄위험평가 필요

② 지역의 범죄예방주체 간의 체계적인 협업체계 구성 (파트너십)

- 범죄위험평가에 맞춘 물리적 환경개선(지자체) 뿐 아니라 경찰활동과의 연계,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필수
- ※ CPTED 참여 주체간 정보공유, 효과적 활동방향 논의를 위한 상시적 협의체 필요
- 범죄예방적 관점에서 다기관 협의체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관 필요

③ CPTED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인증)체계 및 지속적 사후 관리

- 범죄예방 전문기관에 의한 CPTED를 적용한 건축물,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체계를 통한 신뢰성 확보
- ※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한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인증제를 통한 우수시설 확산
- 현장성을 갖춘 기관이 CPTED 시설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사후관리 필요

④ CPTED 사업의 지역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예산 지원책 필요

-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자체의 경우 CPTED 사업이 꼭 필요함에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실시 곤란, 이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

□ 지역사회 CPTED 도입의 바람직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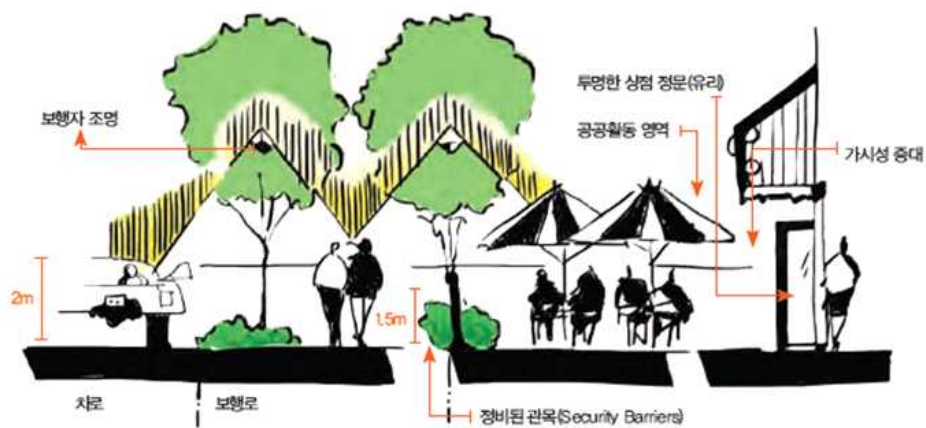
- **사전 조치** : 지역별 범죄 취약지역·요소에 대한 사전 분석, 정보 공유
 - 경찰 CPTED 전문가인 ‘범죄예방진단팀(CPO)’이 관할지역 물리적 환경 진단 및 주민 심층면접 등을 거쳐 범죄 취약지·요소 명확화
 - ※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 접수 활성화
 - 범죄예방환경 진단결과, 지역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등 경찰의 범죄예방정보자료 통합 관리 및 공개를 통해 자율적 환경개선 유도
- **CPTED 실시** : 지역공동체를 통한 문제해결 및 저소득층 방범장비 지원
 - 범죄분석을 통해 파악된 취약지·요소는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 경찰·지자체·주민·관계기관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한 문제해결 실시

△ 지자체, 예산지원 및 물리적 환경개선(경찰 컨설팅 지원)	┌	공동체를 통한 지역 안전 확보
△ 경찰,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예방활동	├	
△ 지역주민, 범죄예방활동 참여 및 커뮤니티 활성화	└	
 - 범죄위험도가 높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범죄예방 장비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범죄예방환경의 ‘빈익부 부익부’ 방지
- **사후 관리** : CPTED 시설 사후관리, 평가(인증)제도를 통한 CPTED 확산
 - 평상시 경찰 순찰활동 시 CPTED 시설 점검 병행, 지자체 및 범죄 예방협의체와 점검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지원
 - 경찰이 CPTED 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우수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범죄안전시설의 확산 유도
- **법적 기반**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지역사회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도화 추진

윤재옥 의원실 정책보고서

V. 부 록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국토부,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 지역사회 CPTED 도입의 바람직한 모델

- 총 범죄의 감소에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 언론에 지속 부각, 수요자 중심의 사전적 범죄예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경찰활동 패러다임 전환, 사후대처 → 사전예방)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14) 사회 불안요인 중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음

- 최근 범죄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CPTE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경찰과의 연계 부족으로 효과성 한계

- △ 일각에서는 CPTED가 모든 지역과 공간, 범죄에 유효한 만병통치약으로 오해, **지역 특성과 체계적 전략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등 문제점 야기
- △ 지역의 범죄환경, 시설·환경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지자체장의 관심에 따라 1회성, 인기성 위주의 사업 진행** (벽화·CCTV 등 가시적·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
- △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지역 편중, 꼭 필요한 저소득층 거주지역이 소외되는 **범죄예방환경의 '빈익빈 부익부' 야기** (상대적으로 안전한 강남구에 CCTV 예산 최다)
- △ 범죄예방 주무기관인 **경찰과의 협력을 위한 정교한 프로세스 부재**, CPTED 효과 한계

⇒ 범죄예방의 주무기관인 경찰과 지역사회 중심의 범죄예방체계를 제도화 하고, 범죄예방의 새로운 영역인 CPTED 사업에서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그간의 추진경과

- '15. 07. 17. 「범죄예방기본법」 제정안 초안 작성 및 국·관회의 보고
- '15. 07. 30. 서청원 의원 상대 의원입법 요청 / 09. 11. 법안 발의
※ 이상일·노철래·박윤옥·이인제·조원진·정용기 의원 등 13인 공동발의
- '15. 09. 14. 안행위 안건 상정 / 11. 24. 안행위 법안 소위 논의
- 이후 국회 파행으로 추가 논의 없이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16. 1~5월 안행위 전문위원실 및 입법조사처와 실무협의, 관계부처 및 학계 전문가 의견조치 등을 거쳐 법안의 완결성을 높인 수정안 마련
※ 안행위 전문위원실과 논의, 법안명을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수정

□ 법안 주요내용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경찰은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지자체·국민이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활동에 함께 참여(시스템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범죄예방은 경찰 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국민의 책무임을 천명, 범죄예방의 주체를 확대·명확화(법안 제1~4조)
- 지역특성과 범죄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선행(제6조)된 후 이에 맞춤형 정책수립과 환경개선(제7조)이 이루어지는 체계 확립
 - ※ 지역 범죄예방협의체 구성(법안 제9조),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참여·효과 거양
- 범죄예방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제10·11조)를 통해 국민 스스로 범죄위험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제8·9조),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강화된 범죄예방활동 전개
- 범죄예방디자인 평가·인증제를 통해 CPTED 사업의 사후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 제공(제13~15조)
 - ※ 인증제도 등 CPTED 전문적 추진을 위해 범죄예방디자인센터 설립

□ 기대 효과

- 본 법안을 통해 범죄예방활동에 다양한 범죄예방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업적 치안공동체 촉진, 범죄율 감소 등 가시적 효과 기대
 - ※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협업적 범죄예방체계가 정착될 경우 향후 10년간 범죄발생이 최대 5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
- 범죄예방진단, 범죄예방정보(Big Data)의 체계적 관리는 범죄취약요소를 명확히 하고, 더욱 효율적인 범죄예방정책 실현 촉진
- 범죄예방디자인 확산을 통해 주거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범죄 두려움 감소 및 범죄예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
 - ※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 주택에 비해 범죄피해가 26~75% 감소, 범죄안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음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案)

- '16. 6. 27.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범죄예방디자인"이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에 범죄예방 기능을 최적화시킨 설계·기술 등을 말한다.
3.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란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에 대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범죄예방진단"이란 경찰이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사

업을 추진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범죄예방진단 및 활용

제5조(범죄예방진단)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관할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전체 또는 관할 지역 내 범죄 위험 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진단을 하는 경찰관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설·건물주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진단의 절차 및 방법, 그 결과의 기록·유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국토의 이용, 도시의 개발 및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시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의견수렴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제9조에 따른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지방경찰청장은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거나, 제9조에 따른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해제한다.
- ⑤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유지·해제 및 강화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범죄예방 강화구역의 관리) ①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가용 경찰관을 증원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장 또는 다른 지방경찰청장에게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강화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협업적 범죄예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역 협업체계의 구축
2. 범죄발생에 대비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3. 순찰·불심검문·차량수배 등 범죄예방활동 강화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범죄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 시 피해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피난 또는 통제 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관할 지역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의 시설이나 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행사의 관리자·사업자에게 시설·환경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 경비 인력의 증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문기구 및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정책의 수립·시행, 범죄예방 분야의 참여치안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자문·협의를 위하여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3장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및 활용

제10조(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①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이하 "범죄예방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범죄위험수준을 진단하고 연구·개선하는 데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범죄예방정보의 수집·관리,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범죄위험지수의 공표) ① 경찰청장은 지역별 범죄위험수준과 범죄예방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범죄위험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범죄위험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범죄위험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범죄예방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범죄 등에 대한 예보·경보) ① 경찰청장은 테러, 연쇄범죄, 대형교통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또는 위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예보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나 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4장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등

제13조(범죄예방디자인 인증)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의 소유자, 관리자, 생산자 등은 경찰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경우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에 인증 받았음을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 ③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인증의 기준·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및 청문) ① 경찰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을 받은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 4. 기타 인증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범죄예방디자인센터의 설립) ① 국가는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 시행 등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범죄예방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범죄예방디자인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범죄예방디자인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범죄예방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범죄예방디자인 표준 마련 및 인증사업

2. 범죄예방디자인 연구 및 교육
 3.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효과성 분석
 4.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방안 마련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예방디자인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⑦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⑧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예방디자인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⑨ 범죄예방디자인센터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⑩ 그 밖에 범죄예방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제16조(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정책 및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①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는 자율방범·교통안전·학교폭력예방·청소년계도 활동과 범죄예방문화 조성 등 협업적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2. 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 경찰청, '05. 9월 판교신도시에 CPTED 시범적용을 위해 제작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단독주택단지, 아파트단지, 공원, 주차장, 학교, 상업시설 등의 조명과 조경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기존도시 및 신도시의 범죄예방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신도시 및 도시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단지 조성이나 개별 건축물 신축에 적용하며 지역이나 범죄의 특성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2. "수고(樹高)"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수목 상단부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3. "지하고(枝下高)"라 함은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4. "자연적 감시"라 함은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조경 등의 물리적 특징을 배치하는 것이다.³³⁾
5. "자연적 접근통제"라 함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³⁴⁾

33)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란 지역 주민들이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행동을 모두 관찰하고 범죄 행위를 발견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역을 설계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을 볼 수 있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느낄 때 보다 안전감을 느낀다

34)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는 범죄자가 범죄목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적발될

6. "영역성"이라 함은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³⁵⁾
7. "활동 활성화"라 함은 일정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원을 배치하거나 다양한 상가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³⁶⁾

제4조(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의 일반 원칙) 건물설계나 신도시 건설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일반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①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거나 주변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도로 등 주변에서 내부또는 내부에서 외부주변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잘 이뤄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② 조경,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설계한다.
- ③ 건물이나 공원등을 설계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 ④ 도시 공간 구조를 다양화하거나 건물내에 다양한 상가나 사무실을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조경

제5조(일반 기준) 조경은 건설교통부의 조경기준을 따르되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식재한다.

- ① 건물의 창문 앞에는 1미터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순차적으로 교목을 식재하되 교목은 지하고 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위험을 증가시켜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며, 도로, 보행로, 조경, 조명, 건물의 입·출구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인도하고 사적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포기하게 한다. 자연적 접근통제의 강화를 위해 자물쇠, 알람 시스템, 출입통제장치 등 물리적·기계적 수단이 사용된다.

- 35) "영역성 (territoriality)" 어떤 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적 공간이 분명해질수록 사용자는 영역에 대한 통제감이 커지며 통제가 강화될수록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감소한다
- 36) "활동 활성화(activity support)"란 주민, 상가 고객 등 정당한 이용자가 공공 공간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지역 주민 등에 의해 공공 공간의 사용이 활발해 질수록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감소한다.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간시간대나 공터 등 취약시간대의 활동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수목의 식재로 인하여 숨을 장소나 함정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침입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조경은 항상 잘 정돈하고 관리하여 시야를 가리거나 조명을 가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
- ⑤ 인접한 곳에는 비슷한 수종을 식재하여 형태나 크기 등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같은 블록에서는 가능한 같은 수종을 식재해야 한다.

제6조(단독주택단지, 아파트단지의 조경기준) ① 단독주택 정원에 수목을 식재할 때에는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수고 1미터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교목을 식재할 경우 지하고를 창문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의 경우 단지앞 정원에는 수고 1미터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단지 중앙부에 지하고 2미터 이상을 가진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를 확보한다.

제7조(주차장의 조경기준) ① 지상주차공간 주변은 숨을 공간이나 함정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관목은 피하고 지하고(枝下高) 2m 이상을 가진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목의 식재로 인하여 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야간에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출구 주위에는 가능한 조경수를 식재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변에서의 자연적 감시가 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제8조(공원의 조경기준) 산책길이나 보도 주위에는 관목을 설치하고 안쪽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공원 이용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조명

제9조(일반기준) 조명은 건설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의 조명시설을 따르되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눈부심 방지(glare-free) 보행자등을 사용하고 조명의 종류는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② 조명은 균일성이 유지되고 명암의 차이가 적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③ 높은 조도의 조명을 적게 설치하는 것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여야 한다.
- ④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도로에는 반드시 보행자등을 설치해야 한다.
- ⑤ 사용되지 않는 장소, 고립된 장소 등은 조명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³⁷⁾.
- ⑥ 유입공간, 표지판, 입구와 출구는 조명을 충분히 밝혀 사람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⑦ 그늘진 곳, 움푹 들어간 곳, 보이지 않는 곳에는 조명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⑧ 조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지면만을 비추도록 설계한다.

제10조(도로의 조명기준) ① 가로등은 차도만을 밝히지 말고 보행로도 함께 밝혀야 한다.

- ② 조명주위에 나무를 식재할 때는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가지치기를 하여 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도로에 설치된 조명은 10m 전방에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 ④ 보행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로수의 지하고(枝下高)를 고려하여 조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단독주택단지의 조명기준) ①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 출입문, 정원, 지상주차장에는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주변환경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에는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 ③ 정원의 조명은 조경에 의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 ④ 단독주택 주변에 설치된 조명은 인근 지역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광 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 ⑤ 단독주택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도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37) 사용되지 않는 장소, 고립된 장소 등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조명이 밝혀져 있으면 그 지역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 해당 지역을 이용함으로써 범죄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한다.

제12조(아파트단지의 조명기준) ① 연립주택이나 빌라, 아파트의 경우 단독 주택의 조명기준을 준용한다.

② 공동출입구와 계단에는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③ 공동주차장이나 아파트 앞 정원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조도는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13조(공원지역의 조명기준) ① 공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인 배치를 하되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여 안전감을 높여야 한다.

②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③ 나무의 가지 등 조경요소에 의하여 조명시설이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공원입구, 통로, 표지판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지하주차장의 조명기준) ①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70 룩스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내부에 조명을 설치할 때는 주차 구획선 위 천장에 설치하여 주차된 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³⁸⁾

③ 지하주차장의 천장조명과 함께 사람의 키 높이 정도로 벽에도 조명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피하여야 한다.³⁹⁾

④ 주차장이나 주차장 유입로의 벽이나 천장에는 빛을 반사하는 페인트와 물질을 사용하고 모든 보행자 지역에는 조도를 높여 안전감을 향상하여야 한다.

⑤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눈부심방지(glare - free)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조명기준) ① 야간에 사용되는 지역은 도로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조명을 공급해야 한다.

38) 자동차는 자체 조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로위에서 조명을 밝힐 필요가 없으며, 범칙의 대부분은 승·하차시 일어나므로 차량 위에서 조명이 밝혀 질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 위에 조명을 설치해야 함

39) 천장에만 조명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그림자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성인의 눈높이(1.5~1.8m)정도의 높이로 주차장 벽에도 조명을 설치해야 함

- ② 주택가 주변의 골목, 공터 등에도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 ③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에도 조명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4장 영역성 확보

제16조(일반기준) 영역성 향상을 위한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정해진 장소로만 출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울타리나 조경을 설치해야 한다.
- ② 외부에서 사적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는 소유감각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상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출입로와 통로의 명확한 경계를 위해 도로와 다른 포장재료 사용, 높이의 차이, 조경 등을 활용해야 한다.⁴⁰⁾
- ④ 현재 위치와 방향감을 제공하거나 일정 지역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로부터 분명하게 보이는 장소에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17조(단독주택단지의 영역성 강화 기준) ① 주택주변에 간단한 정원과 보행로를 만들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② 사적공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경을 활용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⁴¹⁾
- ③ 단독주택단지 외곽은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거주자의 영역감을 증진하되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시야를 방해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 ④ 단지 근처에 가구별 주차장을 설치하고 방문자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아파트단지의 영역성 강화 기준) ① 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도로와 정원 사이에 별도의 보행자 통로를 만들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② 정원은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사적인 공간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0) 주거의 높이를 도로보다 40~120cm가량 높이거나, 도로를 향한 정문에는 계단을 설치하거나 도로의 포장재료와 주택 진입로의 포장재료의 종류·색 등을 달리해야 한다.

41) 단독주택단지나 아파트 단지 주변에 울타리나 조경을 설치할 때는 1m 정도의 높이로 설치하고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도록 해야 한다

- ③ 보행자 통로는 도로와 다른 포장재료나 색깔을 사용해야 한다.
- ④ 아파트 단지 외곽은 조경이나 울타리 등으로 거주자의 영역감을 증진 시켜야 한다.
- ⑤ 거주자 주차장과 방문자 주차장을 구별하여 표시하여 방문자 차량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개된 지역의 영역성 강화 기준) ① 공원이나 상가지역도 사적 지역, 준사적지역, 공적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② 사적지역과 공적지역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이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상가지역은 부지 배치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감을 높여야 한다.

제5장 자연적 접근통제

제20조(일반기준) 사적 공간으로의 접근통제는 다음과 같은 일반기준에 따른다.

- ① 사적지역으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울타리의 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는 도로를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출·입구 통로는 관목이나 잔디를 사용하여 입구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건물외벽을 디자인할 때는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나 시설을 피하여야 한다.
- ⑤ 건물과 구역의 출입구에는 출입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 ⑥ 단지내 출입구의 수를 제한⁴²⁾하고 통과만을 위한 도로는 단지외곽으로 우회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21조(단독주택단지의 접근통제 기준) ① 주택주변에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단 울타리나 펜스는 자

42) 아파트나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 출입구 수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차단해야 한다.

연적 감시를 고려하여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② 출입통로에는 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창문에는 잠금장치와 방범창을 설치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적요소를 고려하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단독주택 단지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배치를 억제하여 지역 주민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제22조(아파트단지의 접근통제 기준) ① 각 동의 출입문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② 각 동의 출입로에는 상징문을 설치하여 사적 공간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 ③ 1, 2층의 외벽은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 ④ 개별 가구의 주 출입문은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창문에도 잠금장치와 방범창을 설치하여 침입을 막아야 한다.
- ⑤ 주 출입로의 입구에는 출입차단기를 설치하며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⑥ 단지 외곽으로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내로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⑦ 주 출입로 입구에 상가를 배치하여 외부인이 단지내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제23조(공개된 공간의 접근통제 기준) ① 공원의 외곽에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②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공원은 출입문을 닫고 조명을 꺼야 한다.
- ③ 사용시간이 정해진 공원은 정해진 시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활동의 활성화 방안

제24조(일반기준) 사람의 활동을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유흥주점 등과 같은 유해환경업소의 위치는 주변 여건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② 도로 주변에 소매점, 편의점과 같은 시설물을 배치하여 자연적인 감



시가 이뤄지도록 한다.

제25조(단독주택단지의 활동 활성화 기준) 주택단지 중앙에 운동장, 레크레이션센터 등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소유감을 높이고 자연적 감시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26조(아파트단지의 활동 활성화 기준) ① 주민자치센터, 관리사무소, 테니스 코트, 어린이 놀이터를 단지 가운데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에는 정자와 벤치를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이웃주민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공원의 활동 활성화 기준) ① 공원에는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단독주택단지나 아파트단지 주변에 공원을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상호작용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토부,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 국토해양부 -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건축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2.1.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 2.2.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 2.3. 일반 건축물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 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 2.4.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 2.5.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3. 적용범위

- 3.1.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이나 개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 3.2.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이나 빈발범죄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방자치

단체나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3.3.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 4.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 4.2. "범죄위험평가"란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 관련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환경 변화가 범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 4.4. "접근통제"라 함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 4.5. "영역성"이라 함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4.6. "활동의 활성화"라 함은 일정 지역에 주민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원을 배치하거나 다양한 상가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4.7. "범죄 불안감"라 함은 범죄 피해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제2장 일반적 범죄예방 설계기준

5. 범죄예방 설계기준 적용 사전검토사항

- 5.1. 설계기준은 해당 지역의 주요 범죄유형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 5.2. 해당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의 분석과 발생이 예측되는 범죄는 무엇인지 등 범죄위험평가를 할 것을 권장한다.

- 5.3. 해당지역의 범죄유형 분석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영역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 6.1.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 간 공간의 위계를 명확히 계획하여 공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6.2.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포장이나 색채의 차별화, 바닥레벨의 변화, 상징물, 조명 등을 설치하여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영역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3. 위치 정보나 지역의 용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색채·재료·조명계획으로 이미지 강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접근통제를 위한 설계기준

- 7.1.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7.2.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7.3. 건축물의 외벽은 범죄자의 침입이 용이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

- 8.1. 외부공간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놀이터, 출입구)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8.2.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시설의 종류와 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8.3. 유해용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조경에 대한 설계기준

- 9.1.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9.2.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조명에 대한 설계기준

- 10.1.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눈부심 방지(glare-free) 등 (燈)을 설치하되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10.2.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여야 한다.
- 10.3. 유입 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주택 설계기준

11. 단지 출입구

- 11.1.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한다.
- 11.2. 출입구는 자연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개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도록 계획한다.
- 11.3. 출입구의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12. 담장

- 12.1.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 12.2.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 등을 설치한다.
- 12.3.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 1~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사계절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한다.

13. 부대시설

- 13.1. 부대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 13.2.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주동 출입구 주변,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며,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14. 경비실

- 14.1. 경비실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 14.2.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내에서 외부로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한다.
- 14.3.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15. 주차장

- 15.1. 지하주차장에는 자연 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15.2.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
- 15.3. 지하주차장의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15.4.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통로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15.5. 방문자 차량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도록 거주자 주차장과 방문자 주차장을 구별하여 계획하는 것을 고려한다.
- 15.6. 지하 최상층, 출입구 근접지역에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 15.7.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을 계획한다.

16. 조경

- 16.1. 조경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사람의 출입에 대한 자연 감시가 가능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한다.
- 16.2.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물과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17. 주동 출입구

- 17.1. 주동 출입구는 영역성이 강화되도록 색채계획, 조명, 문주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17.2. 주동 출입문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17.3.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구 주변에도 조명을 설치한다.

18. 승강기·복도·계단 등

- 18.1. 주동 출입구 외부에서 승강기 출입구가 보이도록 계획한다.
- 18.2. 피난 승강기 이외 승강기는 내부가 보이는 승강기를 권장한다.
- 18.3. 계단실, 승강기내, 승강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고려한다.
- 18.4. 계단실은 외부공간 및 마주보는 세대에서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한다.
- 18.5. 옥상 비상구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 풀림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19. 세대 내부

- 19.1. 세대 현관문(경첩, 문, 잠금장치)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 제품을 설치하고, 신문·우유투입구 등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 19.2. 세대 창문의 방범창·안전잠금장치는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19.3. 외벽, 특히 저층부의 외벽은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0. 옥외 배관

- 20.1. 건물 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20.2. 옥외 배관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보행로, 도로변, 인접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한 방향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한다.

제4장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설계기준

21. 주택주변

- 21.1.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영역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한다.
- 22. 출입구 및 창문
 - 22.1. 대문·현관 등 출입문은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22.2. 출입문은 경첩, 문, 잠금장치 등이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한다.
 - 22.3. 창문 앞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을 계획하지 않는다.
 - 22.4. 창틀, 유리, 방범창, 안전잠금장치 등 창호재는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 옥외 배관 등

- 23.1. 주택 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옥외 배관은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한다.
- 23.2.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 23.3. 주택에 부속된 창고·차고는 발코니·창문 등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계획한다.

24. 조명

- 24.1. 주택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도 보안등을 설치한다.
- 24.2.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에는 유도등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5장 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관광휴게시설 설계기준

25. 출입구 등

- 25.1. 출입구가 건물 외벽에서 안쪽으로 후퇴된 알코브형으로 계획될 경우에는 둔각으로 계획한다.
- 25.2. 상업용 또는 업무용 건축물의 셔터, 출입문 및 창문은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6. 주차장

- 26.1.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
- 26.2.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 26.3.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25미터 이내마다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비상벨의 위치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7. 조명

- 27.1.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을 설치한다.
- 27.2. 10미터 거리에서 야간에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확보한다.
- 27.3. 주차장이나 주차장 진·출입로의 벽이나 천장에는 반사용 페인트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장 편의점 설계기준

28. 주변·외벽

- 28.1. 건물(점포) 정면은 가로 막힘이 없어야 하고, 시야가 확보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9. 창문 등

- 29.1. 창문이나 출입구는 내·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
- 29.2. 카운터는 가급적 외부 시야가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30. 부대시설

- 30.1.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계획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표지판을 출입구 및 카운터에 설치한다.
- 30.2. 카운터에서 관할 경찰서 등에 통보 가능한 무음 경보시스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7장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설계기준

- 31.1. 출입구에는 무인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경비실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31.2.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31.3. 출입문과 창문은 외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적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 31.4.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다른 용도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용출입구 설치를 권장한다.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에 관하여는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에 따른다.